

3.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施行令 · 施行規則(案) 立法豫告

內務部 公告 第1996-119號 1996. 5. 14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 요 골 자

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을 정함

- 장래에도 마을로 존속가능한 20가구이상 상주마을로
 -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구역, 관광사적지, 주요도로변 등 위치마을
 - 불량주택이 1/3이상이고 주민 2/3이상이 지구지정을 희망하는 마을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체계적 추진절차 마련

-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서 제출
 - 30일이내 승인여부 검토 통보
- 승인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 미착수시 시행자 변경 또는 취소

다. 주거환경개선 재원조성근거를 규정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주택기금, 농협중앙회의 출연금
- 지원규모, 금리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함

라. 농어촌 주택조합의 구성 및 조합원 자격기준

- 조합원의 자격은 무주택자 또는 농·림·어업인으로 하되
- 농·림·어업인이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함

마. 농어촌 빙집의 정비절차, 보상비 지급등

- 빙집정비에 따른 소유자 청문은 청문예정일 14일전까지 사유 및 일시, 장소등을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

- 철거보상비의 산정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으로 하며, 현금으로 지급

제정 취지

노후·불량한 농어촌주택의 현대화사업을 촉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체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1995년 12월 29일에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코자 하는 것임.

주택회보